

**경영일반**

이사회운영규정

## 제 1 장 일 반

### 제 1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2 조(목적)

본 규정은 이사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3 조(책임과 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제 5 조(의장)

이사의회의 의장은 정관 제 39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5 조의 2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2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(전자우편 포함)으로

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 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9 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  2. 주요 경영에 관한 사항
    - (1)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- (2)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
    - (3)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의 설치, 폐지
    - (4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 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(1)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
      - 가.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
      - 나.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, 별도공장의 신설
      - 다.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의 차입
      - 라.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
      - 마.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
    - (2) 주식 및 채권에 관한 사항
    - (3) 매출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
    - (4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  4. 이사에 관한 사항
    - (1)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  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  5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 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·집행한다.
-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 10 조(의안 설명)

- ①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의 설명은 해당 안건의 담당 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해당팀장 또는 지명된 자가 설명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이나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 11 조(위임사항)

- ① 제9조 부의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표이사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담당 이사 및 집행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#### 제 12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. 정관에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3 조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# 제 14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 15 조(의사록)

- ①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제 16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(시행)

본 규정은 2015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